

민간경비업무의 발전방안 연구: 이벤트 경비업무를 중심으로

하 정 훈*

〈요 약〉

본 연구는 민간경비업무현장에서 이벤트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이 현재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민간경비업무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분야 교수자 4인과 경력 10년 이상의 현장전문가 6인에게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민간경비업무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이벤트경비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교육이 필요시 된다.

둘째, 관객 응대 및 관객 민원 발생 시 대처 요령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서비스 관련 교육이 필요시 된다.

넷째, 경비업법에서 집단민원현장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여섯째, 책임감 및 사명감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주제어 : 민간경비업무, 발전방안, 이벤트경비업무, 현장전문가

* 중원대학교 체육학부 경호학전공 교수

목 차

- | |
|-------------|
| I. 서론 |
| II. 이론적 배경 |
| III. 연구방법 |
| IV. 결과 및 분석 |
| V. 논의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드론을 이용한 테러가 발생되어지고, 그 동안 불문율처럼 여겨지던 대통령경호처의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신체조건과 관련하여 시력기준은 안경을 착용하여도, 신장은 키가 작아도 채용전형을 지원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 하였다.

이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위태상황이 발생되어지고, 이러한 위협요소들을 제거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경호요원에게 필요시 되는 환경으로 변화되어 지고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경호의 외적환경에 적합하도록 경호기관이나 경호임무를 수행하는 요원, 그리고 관련 규정들도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이다.

하지만 민간경비업 분야는 관련 규정에 의한 규제 및 내부적인 어려움 등에 의하여, 긍정적인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비업법」상 경비업무가 경비업무의 내용에 관한 자유로운 도급계약의 형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경비업무의 유형을 5개로 제한하여 열거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적인 입법기술이다(최은하 등 2017). 이벤트와 관련되어져서 행해지고 있는 경비업무는 관련법인 경비업법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정의 및 분류되어 있지 않고, 해석권자의 해석에 따라 각각의 상이한 업무로 해석되어지고 있다. 이는 이벤트경비업무 관련하여 전반적인 모호성

을 초래하고 나아가서는 대형 안전사고의 발생을 불러 올 수 있는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의 이벤트 산업은 주최지의 이미지를 흐리게 할 수도 있는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별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조사분석의 결과는 안전시설과 응급시설에 더 만족할수록 재방문의사가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내었다(권영국, 이택균, 2000).

국제스포츠행사 시 시민안전관리를 위한 국가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으로서의 민간경비제도 정립과 더불어 민간경비업계 및 관련 정부기관들 간 상호협력체제와 국제 스포츠행사의 운영상의 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될 필요성이 제기 된다 (강경수, 2015).

대규모국제이벤트에서의 성공적인 개최여부는 개최국가의 국가역량으로 평가되어지고 있으며, 개최 국가는 동원 가능한 다양한 첨단기법과 인력을 동원하여 참가 인원 및 행사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안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국제스포츠이벤트는 스포츠가 한 특정지역과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산업분야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또한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는지를 보여주는 스포츠 가치네트워크의 핵심 분야로 정치·사회·문화·경제 등 인간이 관여하는 대부분의 분야와 상호 작용하고 있다(인상우, 2011).

국제스포츠이벤트 개최의 이면에는 테러리즘이라는 위협이 상존하고,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테러리즘이 10여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례 중에서 한국과 독일은 국제스포츠 이벤트와 관련된 테러리즘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다(전대양, 이대성, 2011).

특히나 대형 국가중요이벤트에서의 경비관련 사고는 개최국의 국제 신뢰도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자칫 국가적인 재난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에, 현재의 이벤트경비업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 여겨진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연구주제와 관련 있는 문헌자료를 분석하고, 관련분야 학위소지자와 이벤트경비업무를 기획하고 일선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을 대

상으로 이벤트경비업무의 종합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발전적인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이벤트 경비업무의 현행제도를 분석한다.
- 둘째, 이벤트 경비업무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 셋째, 이벤트 경비업무의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이벤트의 개념

이벤트의 사전적 정의를 들여다보면 불특정의 사람들을 모아 놓고 개최하는 잔치, ‘기획 행사’, ‘행사로 순화(표준국어대사전). 또한, 공급자들의 일방적으로 자신의 매스미디어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타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이벤트는 현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메시지의 발신자와 수용자가 함께 그리고 동시에 인간 상호간의 정감과 동질감을 느끼게 해준다(정경훈, 진중훈, 2006).

이벤트의 어원은 라틴어 e-(out, 밖으로)와 venire(to come, 오다)의 합성어로 evenire(밖으로 나오다)에서 유래되었으며 영어로는 사건을 뜻하는 말로 여기서 사건이란 부수적이거나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스케일이나 형식이 특이하여 기억에 남을 사건을 뜻하는 말이다.

이벤트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이벤트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학자별 이벤트의 정의

학 자	년도	내 용
Wilkinson	1988	주어진 시간동안 특정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계획된 일회성 행사
Goldblatt	1990	특정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의식과 절차가 일어나는 공간이며, 계획에 따라 기대감을 유발시키고, 특정 동기와 함께 발생
유동근·김성혁	1992	인간의 참가와 공감창조를 전제로 한 모든 행사
Uysal & Martin	1993	방문객을 성공적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한 지역의 문화자원
한국관광공사	1994	사회적, 시대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행사

학 자	년도	내 용
고사카 센지로	1996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각각 개별적이고 직접적으로 자극을 체험하는 미디어
이시혁	1996	특정 목적을 가지고, 특정기간에, 특정장소에서 특정대상에게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수단
이봉석 외 7인	1998	일과성 또는 정기적인 범주를 넘어선 레저, 사회·문화적 경험의 기회
김계섭	1995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사건을 창조, 조작, 거래, 판매하려는 활동으로서 많은 대중의 호응을 받아 그 분위기가 소란스럽고 활력이 넘치는 현상
김희진	2004	이벤트란 특정의 목적, 기간, 장소, 대상을 전제로 하여 실시되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이며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 매체
Allenetal	2005	사회,문화,기업의 특별한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특별한 때를 기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되고 창조되는 것
이경모	2006	주어진 기간 동안 정해진 장소에 사람을 모이게 하여 사회·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행사 또는 의식으로서 긍정적 참여를 위해 비일상적으로 특별히 계획된 행동
호텔용어사전	2008	공익, 기업의 등 특정 목적을 가지고 치밀하게 사전 계획되어 대상을 참여시켜 실행하는 사건 또는 행사를 총칭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특정 목적이란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적 진흥과 관련 산업의 발전, 관광 등을 지칭한다
김동준	2010	대상을 상대로 실시되는 특정 목적의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엔터테인먼트와 공연예술을 포함한 개념
현대경영연구소	2013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정된 기간에 특정된 장소에서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개별적·직접적으로 자극을 체험시키는 미디어
하정우	2014	특정한 목적으로 사전에 계획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해지는 행사 등을 뜻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는 의도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 출처 : 김계섭(1995), Getz(1997), 이경모(2006), 김희진(2004), 김희정(2005), Allenetal(2005), Goldblatt(2005), 현대경영연구소(2013)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2. 이벤트의 구분

이벤트는 현대인의 소비패턴 및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이벤트는 각종전시형 이벤트(박람회, 전시회), 컨벤션, 문화이벤트, 판촉이벤트, 스포츠이벤트, 지역이벤트(축제)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 생활 곳곳에 자리매김 하였다(안태기·김희진, 2005).

제례의식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우리나라 이벤트 역사는 88서울올림픽, 93대전엑스포 등과 같은 메가이벤트의 개최를 계기로 하나의 산업으로 보편화되기 시

작했다(강민정, 2003).

이와 같이 다양한 이벤트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이경모(2006)는 이벤트목적에 따라 여덟 가지로 분류하였다. 대분류로 축제이벤트, 전시·박람회이벤트, 회의이벤트, 문화이벤트, 스포츠이벤트, 기업이벤트, 정치이벤트, 개인이벤트로 분류하였으며, 다시 성격에 따라 소분류와 세 분류로 구성하였다.

서구의 이벤트 학자 Getz(1997)는 이벤트의 분류를 성격별로 문화이벤트, 예술·연예 이벤트, 상업이벤트, 스포츠이벤트, 교육·과학이벤트, 레크레이션 이벤트, 정치이벤트, 개인이벤트로 분류하면서 박람회, 산업전시회, 전람회 등은 상업이벤트에 해당한다고 예시를 제시하였다.

〈표 2〉 이벤트의 분류

구분	행사내용
기업이벤트	기업SP(sales promotion), 신제품발표회 등
축제이벤트	지역축제, 할로윈데이 등
전시박람회이벤트	전시회, 박람회, 엑스포 등
회의이벤트	학술대회, 국제회의 등
정치이벤트	출판기념회, 단합대회 등
문화이벤트	문화제, 예술행사, 콘서트, 팬사인회 등
스포츠이벤트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골프대회 등
개인이벤트	생일잔치, 결혼식 등

※ 출처 : 이경모(2006)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3. 이벤트경비업무

대한민국의 경비업무는 경비업법에 의하여 규정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비업법은 1976년 “용역경비업법”으로 제정되어진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산업현장의 발전 속도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변화되어지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최경철(2016)은 국가는 더 이상 민간경비업을 규제와 처벌의 대상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민간경비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 경비업무영역을 다양화하고 세분화하고 있음을 주목하여 민간조사업, 교통유도경비, 민간군사경비업 등과 같은 경비업무의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경비업무가 확대된다면 더 큰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경기부양은 물론 기업의 글로벌화를 꾀할 수 있어 선진화 및 전문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박동균, 김태민, 2010).

〈표 3〉 경비업무의 구분

업무구분	내용
시설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호송경비업무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기계경비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특수경비업무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출처: 법제처(www.moleg.go.kr/)경비업법 제2조

본 연구에서는 현행 경비업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틀을 벗어나, 이벤트와 관련하여 행해지고 있는 일련의 경비업무를 이벤트경비업무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신제품발표회의 중요한 신제품을 호송하는 호송경비업무일수도 있고, 콘서트·팬사인회에서 연예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신변보호업무일수도 있으며, 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장 시설의 화재나 혼잡을 방지하는 시설경비업무에 해당되어 질수도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의 틀

본 연구는 민간경비업무 중에서 이벤트경비업무 분야의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헌자료 분석 및 심층면담기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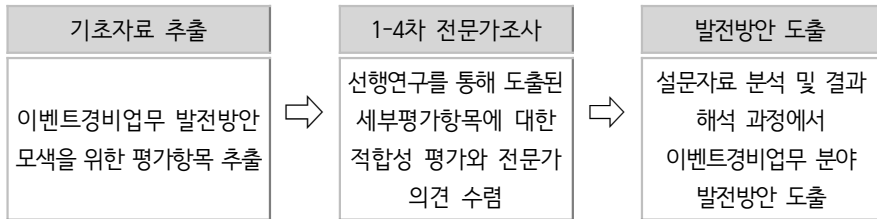
활용한 연구를 다음과 같은 연구절차에 의하여 수행하였다.

첫째, 민간경비와 이벤트 관련한 국내·외 서적과 학술지, 연구논문 등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둘째, 관련분야 교수자와의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셋째, 다년간 이벤트경비업무의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는 현장전문가들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은 흐름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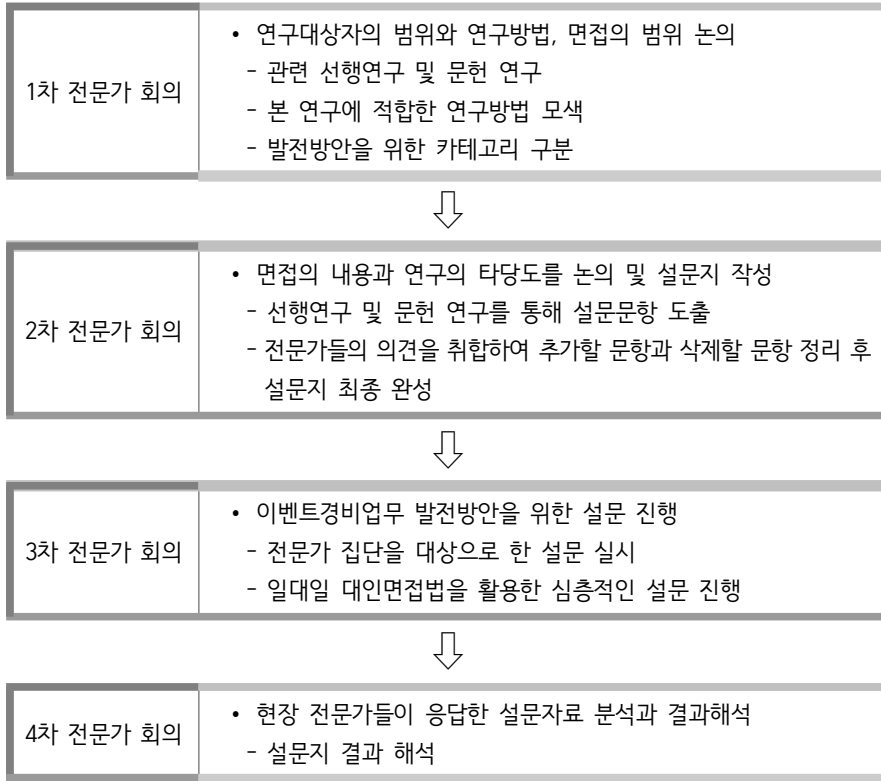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진행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 회의를 연구목적에 맞도록 4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전문가집단은 연구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경호학과 전공교수 2인, 경찰학과 전공교수 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4인과 현장경력 10년 이상인 이벤트경비업무 현장전문가 6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간략하게 전문가 회의 진행과정을 [그림 2]에 표기하였다. [그림 2]에서 보여 주듯이 1차 전문가회의에서는 연구대상자의 범위와 연구방법, 면접의 범위를 논의하였고, 2차 전문가회의에서는 면접의 내용과 연구의 타당도를 논의하면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3차 전문가회의에서는 설문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응답한 설문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절차로 진행하였다.



〈그림 2〉 1-4차 전문가 회의 세부내용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유의표집법(purposive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설문문항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교수자 4인과 경력 10년 이상의 현장전문가 6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현장 전문가집단의 근무경력은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선정하였다. 해당 연구 주제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며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려고 하였으며 연구의 주된 목표인 전문가 의견수렴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사료되었다.

그리고 이벤트 경비업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립적 판단이 가능한 현장전문가로 보여지며, 본 연구의 목적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이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사 분석의 핵심인 표본의 조사는 2018년 7월 6일 - 2018년 8월 29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자료들을 분석하고, 참여관찰과 심층면담기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대상자들의 참여관찰은 직접참여와 간접참여로 이루어졌고, 연구대상자들에게 비 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한 후에 반 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회의를 3회에 걸쳐 실시하면서 이벤트경비업무의 교육적 측면, 법·제도적 측면,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 측면, 경험한 문제점별로 구성된 문항을 토대로 면접의 범위 및 내용을 도출하였으며, 심층면담은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면담에서 자료수집이 불충분한 부분은 E-mail 및 전화를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보충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설계는 <표 4>와 같으며, 선행연구와 관련문헌연구 및 1-2차 전문가조사를 통하여 구성되었던 현장 전문가집단 면담에 사용한 면접 범위 및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4〉 표본설계

표본	유의표집법을 통해 선정된 관련 전문가	
조사기간	1차 면담	2018년 7월 10일 - 2018년 7월 14일
	2차 면담	2018년 7월 17일 - 2018년 7월 21일
	3차 면담	2018년 7월 25일 - 2018년 7월 29일
	4차 면담	2018년 8월 1일 - 2018년 8월 7일
표본크기 : 관련분야 교수자(4명), 현장전문가(6명)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사용된 면접 내용 중 개인적 특성은 (양미진 등, 2012)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내용을 재구성하였고, 교육적인 측면은 하정훈(2018)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으며, 법·제도적 측면은 김태환, 박옥철(2005)을 참고하였고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 측면은 백승민(2014)의 연구를 그리고 경험한 문제점과 관련하여서는 관련전문가회의를 통하여 본 연구의 방향과 부합하도록 재구성하였다.

〈표 5〉 면접의 범위 및 내용

하위요인	설문내용
개인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근무경력, 결혼유무, 전문분야
교육적 측면	1. 이벤트경비업무 경비원의 업무 전 교육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2. 이벤트경비업무 경비원의 현장에서 교육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3. 이벤트경비업무 경비원에게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가?
법·제도적 측면	1. 이벤트경비업무와 관련된 관계법은 알맞게 제정 되어졌는가? 2. 이벤트경비업무와 관련된 관계법이 개정 되어져야 될 내용은?
관계기관 상호협력측면	1. 경찰 및 계약상대방(이벤트주관사, 기획사 등...)과는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가?
경험한 문제점	1.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접적으로 경험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2. 업무를 수행하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 출처: 양미진 외(2012), 김태환·박옥철(2005), 백승민(2014), 하정훈(2018)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적합하게 재구성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료를 수집한 후 선정된 전문가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각각의 요인별로 요약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론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들로부터 면접 자료를 받고, 수거되어진 자료를 갖고서 전사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경호학과 전공교수 2인, 경찰학과 전공교수 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를 진행하여 내용의 타당성 검증과 각 각의 요인별로 내용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IV. 결과 및 분석

1. 이벤트경비업무의 문제점

1) 교육적인 부분의 문제점

이벤트경비업무에서 현장전문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교육적인 부분 관련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현장전문가 KJW는 “짧은 시간에 경비업 관련 전반적인 교육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직무교육에서 많은 부분 교육이 이루어 져야 될 것이다.”

현장전문가 JSH는 “기본적인 경비교육은 그런대로 이뤄지고 있지만, 서비스 관련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현장전문가 MHL은 “질서유지 임무 수행 시, 관람객의 욕설 및 폭행이 빈번히 발생되어지고 있다.”

2) 법·제도적인 부분의 문제점

현장전문가 BSM은 “현재의 복장 규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어 지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소수의 근무자가 투입되어지는 현장에서는 가능하겠지만, 다수의 인원이 투입되어지는 현장에서는 법규를 준수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현실에 맞도록 복장의 색상 규정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현장전문가 KBS는 “현재 대부분의 이벤트경비업무는 집단민원현장에 포함되어 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다.”

현장전문가 LYJ는 “집단민원현장의 규정에서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100명 이상이 모이는 것은 행사가 진행되어진 후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며, 업무 투입 전에 이를 판단한다는 것은 잘못된 규정이라고 본다.”

현장전문가 BSM은 “경찰에서의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경비원 배치 시 의무적으로 하여야 되는 경비원배치신고를 하지 않고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도 흔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현장전문가 KJW는 “업무의 특성 상 이벤트관련 안전 및 경비업무를 경비원으로 계약 후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집단민원현장으로 경찰에서 진행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법처럼 경비원을 행사진행요원으로 계약 하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현장전문가 MHL은 “이벤트경비업무의 감독기관인 경찰들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하여 경비업체의 경비원으로 계약하지 않고, 이벤트기획사의 일용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3) 기타

현장전문가 KJW는 “적은 인원으로 많은 관람객들을 통제 하다 보니 집중력이 떨어지고, 완벽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하였다.”

현장전문가 BSM은 “갑(이벤트기획사)의 절대적인 선택에 의해 경비업체가 선정되어지다 보니 덤핑계약 및 이면계약이 만행되어지고 있다.”

또한, 현장전문가 JSH는 “업무를 수행하고 나서 용역비를 지급받는데, 영세한 이벤트기획사가 많아서 용역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하였다.”

아래의 <표 6>은 현장전문가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6> 이벤트경비업무의 문제점

하위요인	도출내용
교육	이벤트경비업무와 연관성 있는 교육 없음 서비스 관련 교육 부족
법·제도	집단민원현장(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 규정 경찰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경비원 배치신고 미 이행, 편법적인 계약, 일용직으로 채용 복장(색상동일 조항)규정이 비현실성
기타	열악한 근무여건(소수의 인력으로 다수의 관람객 통제) 덤핑계약 및 이면계약 업무 후 결제시스템 및 영세이벤트기획사로 인한 용역비 미지급사례 빈번

2. 이벤트경비업무의 발전방안

1) 교육적인 부분의 발전방안

이벤트경비업무 현장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발전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현장전문가 KBS은 “이벤트경비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관람객 응대요령 및 complain 대처요령 등을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좋겠다.”

현장전문가 MHI은 “질서유지 임무 수행 시, 관람객의 욕설 및 폭행이 빈번히 발생되어지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대응요령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장전문가 LYJ는 “고객을 응대하고 대면하는 게 가장 큰 부분이어서, 서비스관련 교육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2) 법·제도적인 부분의 발전방안

현장전문가 MHL은 “이벤트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경비관련전문가가 포함되어져야 안전하게 업무가 수행될 수 있다고 하였다.

현장전문가 BSM은 “현재의 복장 규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어지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소수의 근무자가 투입되어지는 현장에서는 가능하겠지만, 다수의 인원이 투입되어지는 현장에서는 법규를 준수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현실에 맞도록 복장의 색상 규정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현장전문가 KBS은 “현재 대부분의 이벤트경비업무는 집단민원현장에 포함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현장전문가 LYJ는 “집단민원현장의 규정에서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100명 이상이 모이는 것은 행사가 진행되어진 후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며, 업무 투입 전에 이를 판단한다는 것은 잘못된 규정이라고 본다.”

3) 기타

현장전문가 KBS는 “이벤트 대행업무와 경비업무를 별도의 용역으로 구분하여 업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현장전문가 KJW는 “임무를 수행해 넘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책임감 또는 사명감을 강조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진다.”

<표 7>은 현장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나타난 발전방안들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7〉 이벤트경비업무의 발전방안

하위요인	도출내용
교육	연관성 있는 교육 필요(관람객응대, complain 대처요령, 질서유지 임무) 서비스 관련 교육 필요
법·제도	이벤트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경비관련전문가 포함 되어 기획 집단민원현장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 복장(색상동일 조항)규정이 비현실성
기타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경비업무를 이벤트대행업무와 별도의 용역으로 구분하여 계약 체결 책임감 및 사명감 교육

V.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이벤트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이벤트경비업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자들의 면접과 관련전문가들의 논의 과정 및 결과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이벤트경비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교육이 필요시 된다.

둘째, 관람객 응대와 관객민원 대처 요령교육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서비스 관련 교육이 필요시 된다.

넷째, 경비업법에서 집단민원현장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여섯째, 책임감 및 사명감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경비업무와 관련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벤트경비업무만을 특정하여 연구 되어졌다는데서 의미를 들 수 있겠다.

이벤트경비업무는 한국의 문화강국으로 나아가는 현실에서 세계인들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얘기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벤트경비업무 관련 현장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발전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향후 이벤트경비업무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이벤트기획사와 경찰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벤트경비업무만을 특정하여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이벤트경비업무의 정책반영에 매우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어지리라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경수 (2015). 국제 스포츠행사시 시민안전관리에 관한 정책대응 : 민간경비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49, 23-40.
- 강민정 (2003). 이벤트 종사자의 교육훈련 필요성 인식 차이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영국, 이택균 (2000). 이벤트 행사장의 안전요소에 관한 연구 -99 하남 환경 엑스포를 중심으로-.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206.
- 김동준 (2010). *관광이벤트론*. 백산출판사.
- 김희정 (2005). 우리나라 이벤트 산업 입찰제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동균, 김태민 (2010). 경비업법 개정의 주요 쟁점과 개정방안. *한국경찰연구*, 9(1), 3-26.
- 안태기, 김희진 (2005). 판촉이벤트의 활용에 관한 연구 : 광주지역 백화점 3사를 중심으로. *이벤트학연구*, 4(2), 1-23.
- 이경모 (2006). *이벤트학원론*. 백산출판사.
- 인상우 (2011). 스포츠이벤트 레거시의 형성과정. *한국체육학회지*, 40(4), 14.
- 전대양, 이대성 (2011). 국제스포츠이벤트 테러리즘의 분석과 향후전망 -한국과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스포츠와 법*, 14(3), 145-169.
- 정경훈, 진종훈(2006). 성공하는 문화마케팅을 위한 축제와 이벤트 글누림.
- 최경철 (2016). *경비업법령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하, 김나리, 유영재 (2017). 현행 '경비업법'상 경비개념과 경비업무 해석의 한계 및 민간보안산업 관련 입법의 제·개정 방향. *한국경호경비학회지*, 50, 33-57.
- 하정우 (2014). 스포츠이벤트의 프로그램품질이 관람만족과 경기몰입, 팀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고양오리온스농구단과 인천전자랜드농구단 비교-.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정훈 (2018). 국가시험 보안업무의 발전적 방안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55, 75-95.
- 현대경영연구소 (2013). *이벤트 성공의 길*. 승산서관.
- Getz, D. (1997). *Festival Management & Event Tourism*. Cognizant Communication Corporation, New York.
- Goldblatt, J. (1990). *Special event : The art and science of celebration*. New York: VanNostrandReinhold.

법제처(www.moleg.go.kr)경비업법 제2조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

【Abstract】

**A Study on Development of Private Security Service:
—Focused on event security service—**

Ha jeong h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evelopment methods of private security services based on the problems that field experts in charge of event security are currently aware of.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conducted interviews with 4 professors in relevant fields and 6 field experts with more than 10 years experience and analyzed the data. They suggested the development of private security services as follows.

First, education that is related to event security work is necessary.

Second, training should be conducted in response to audience and audience complaints.

Third, service-related training is required.

Fourth, in the Security Law, the provisions of the collective complaints field should be adjusted to the reality.

Fifth, improving poor working conditions.

Sixth, it is necessary to educate to develop responsibility and sense of mission.

Keywords: Private security, Development, Event security service, Expert